

대기관리 절차서

(Air Emissions Management Procedure)

제정·개정 이력

표준 번호	DGP-0103
2007.03.30	최초 제정
2025.07.29	1차 개정

담당

책임부서	총무부
관리책임자	이한경 차장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 전반적인 활동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는 친환경적인 생산활동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2. 용어의 정의

2.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말한다.

2.2 가스상의 물질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질을 말한다.

2.3 입자상 물질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2.4 악취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

2.6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 특기사항

3.1 환경오염물질 식별 및 관리표 작성

공정/활동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성분 또는 관리 방법이 변경될 경우 주관팀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물질 식별 및 관리표'를 개정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물질 흐름도 작성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원, 배관경로 및 기타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환경/안전부서장은 '환경오염물질 흐름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3.3 배출/방지시설의 필요성 파악

1) 주관부서장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배출/방지시설의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부서장에게 배출/방지시설의 LAY OUT 작성을 의뢰한다.

2) 배출/방지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관련팀장은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부서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련부서장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서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관련법규 교육 및 비상사태 훈련실시

- 1) 주관부서장은 법규등록부,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관련부서 또는 배출/방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주관부서장은 배출/방지시설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사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기준내 운영 및 운영기록부 작성

- 1) 주관부서장은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부표1,2,3 을 참조하여 '환경오염 물질사내배출기준'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방지시설을 정상 운영 하여야 한다.
- 3) 관련팀장은 배출/방지시설 가동시 관련법규 또는 운영메뉴얼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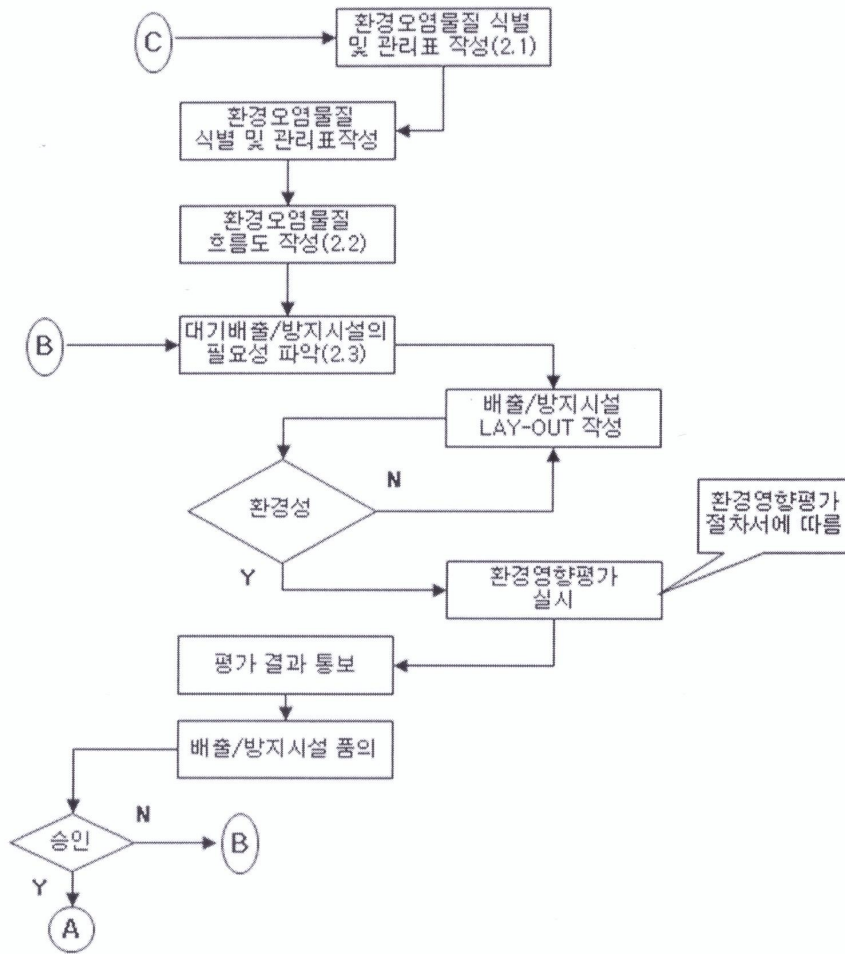
3.6 배출/방지시설의 점검 및 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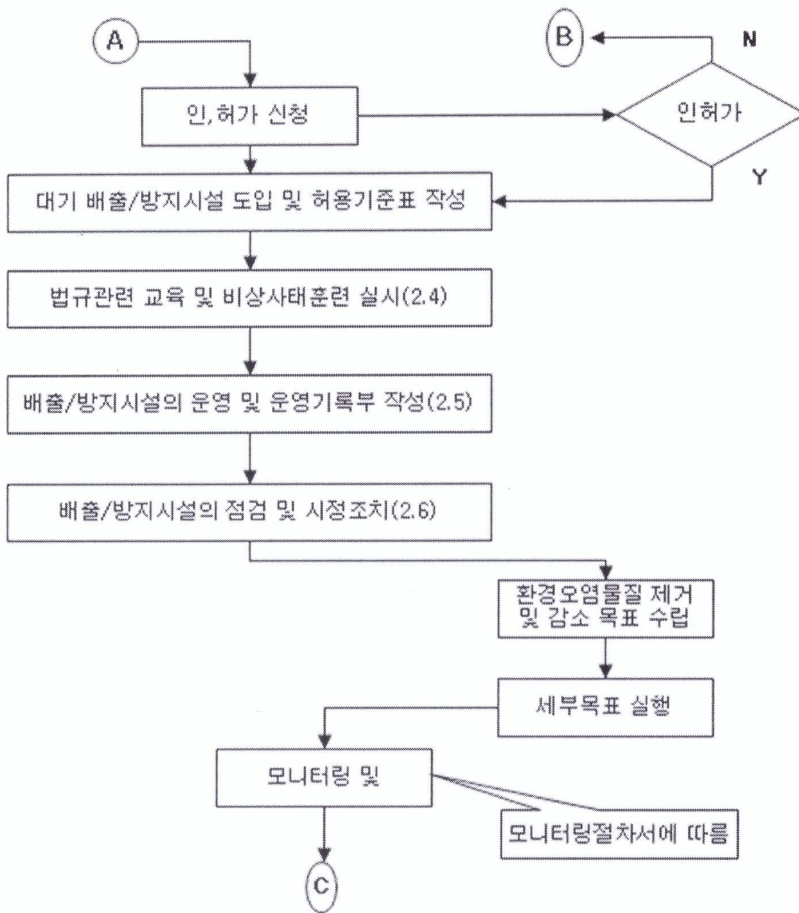
- 1) 관련부서장 및 공무부서장은 배출/방지시설이 부식이나 마모되어 환경오염 물질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장 또는 훼손을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 2) 주관부서장은 배출/방지시설이 적정효율로 정상가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 및 부산물 제거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7 모니터링 및 측정

- 1) 대기담당관리자는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사물인터넷 IOT 운영 모니터링)
-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의 관리는 '계측관리절차서'에 따른다.
- 3) 측정업무를 외부 대행업체에 의뢰할 때는 '환경협력업체관리절차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각 법정관리자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연 상.하반기 2회(30%이하 1회), 대기5종(먼지, 탄화수소))

4. 업무 흐름도





2025. 07. 29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철

